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			2019-01-19	10,000	10,000	0
			2019-04-20	10,000	10,000	0
			2019-05-18	10,000	10,000	0
			2019-06-20	10,000	10,000	0
126-82-13220	120 02 12220 115 017/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2019-07-20	10,000	10,000	0
120-02-13220	나눔의집(사회보장정보원)		2019-08-20	10,000	10,000	0
			2019-09-20	10,000	10,000	0
			2019-10-19	10,000	10,000	0
			2019-11-20	10,000	10,000	0
			2019-12-20	10,000	10,000	0
기부금액 계						100,000
		법정기부금	2019-01-02	5,000	5,000	0
203-82-00639	대한적십자사		2019-02-01	5,000	5,000	0
			2019-03-02	5,000	5,000	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	203-82-00639 대한적십자사		2019-04-02	5,000	5,000	0
			2019-05-02	5,000	5,000	0
			2019-06-01	5,000	5,000	0
		법정기부금	2019-07-03	5,000	5,000	0
203-82-00639			2019-08-01	5,000	5,000	0
			2019-09-03	5,000	5,000	0
			2019-10-03	5,000	5,000	0
			2019-11-01	5,000	5,000	0
			2019-12-03	5,000	5,000	0
기부금액 계						60,000
인별합계금액						16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부인	81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112-82-00240	Z대학교발전기금	법정기부금	2019-09-20	5,000,000	5,000,000	0
기부금액 계						5,000,000
인별합계금액						5,00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3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철수	05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214-82-08005	CCOLTILITIE	조그다눼이되저기ㅂ그	2019-01-25	10,000	10,000	0
214-02-00003	005 CC인재재단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중파단제외시정기구급	2019-02-26	10,000	10,000	0
기부금액 계						20,000
인별합계금액						2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4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부친	42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			2018-01-25	10,000	10,000	0
			2018-02-26	10,000	10,000	0
			2018-03-27	10,000	10,000	0
			2018-04-25	10,000	10,000	0
		2018-05-25	10,000	10,000	0	
214-82-08005	214 02 00005	조그다베이지저기비그	2018-06-25	10,000	10,000	0
214-82-08005 CC인재재단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	2018-07-30	10,000	10,000	0	
			2018-08-28	10,000	10,000	0
			2018-09-28	10,000	10,000	0
			2018-10-29	10,000	10,000	0
			2018-11-29	10,000	10,000	0
			2018-12-26	10,000	10,000	0
기부금액 계						120,000
112-82-05245	VV연구센터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2018-08-27	10,000	10,000	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5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부친	420101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날짜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	112-82-05245 WV연구센터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	2018-09-27	10,000	10,000	0
112 02 05245			2018-10-25	10,000	10,000	0
112-02-03243		중교단제외시성기투급 	2018-11-26	10,000	10,000	0
			2018-12-26	10,000	10,000	0
기부금액 계						50,000
인별합계금액						170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